

나. 위해평가결과의 공표 여부, 범위,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(안 제7조)

- (1)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해평가의 공표 여부 및 범위를 결정
- (2)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또는 언론을 통해 공표

다.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및 문구 조정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제1항, 제6조제1항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먹는물관리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- 환경부 공고 제2009- 292호, 2009. 9. 25 -

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음료·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조정·부과하여 먹는샘물과 음료류·주류 등 기타샘물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먹는물관리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기타샘물 개발자간 차등 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균형 부과토록 함.(안 제8조)

- (1) 먹는샘물과 음료류·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단계적 조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

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2년부터 동일한 금액을 부과함.

- (3)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·부과함으로써 샘물간 부과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※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